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 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본조신설 2021. 7. 27.]

[종전 제66조는 제66조의2로 이동 <2021. 7. 27.>]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7. 11. 28., 2021. 7. 27.>

-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제66조에서 이동 <2021, 7, 27.>]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8. 4. 17.>

-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1의2.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 선사업을 경영한 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 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6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 4. 삭제 < 2021. 7. 27.>

[본조신설 2018. 8. 14.]

- 제6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6. 15., 2018. 4. 17.>

-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6. 15., 2011. 9. 16., 2013. 5. 22., 2014. 3. 18., 2015. 6. 22., 2015. 12. 29., 2018. 4. 17., 2018. 8. 14., 2021. 7. 27.>
-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 4. 제10조를 위반한 자
-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의2. 삭제 < 2015. 6. 22.>
- 7의3. 삭제 < 2015. 6. 22.>
- 8.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 하지 아니한 자
-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0. 삭제 < 2015. 6. 22.>
- 21. 삭제 < 2015. 6. 22.>
-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 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 ④ 삭제<2011. 6. 15.>
- ⑤ 삭제<2011. 6. 15.>
- [법률 제15602호(2018. 4. 17.)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